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5. 3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6. 5

다. 상정일자 :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5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운동장 사용허가에 있어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 타사·군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운동장 연습(이용)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용허가자를 “시장”에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
- 운동장 사용시 입장권을 발매하거나 입장료를 구입할 행사 및 경기가 없어 불필요로 입장권 및 입장료에 관한 관련규정 폐지
- 사용허가절차 및 사용료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정
- 전용사용자 부담을 경감코자 운동장 사용시간중 “조기” 사용시간 삭제
- 사용료 감면기준 확대
- 축구경기장 전용사용료를 기존 1게임 원칙에서 1일 3시간으로 변경
- 잔디구장(축구경기장)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운동장을 체육외 행사로 사용할 경우 별도 사용료 신설
- 부대시설 사용시 실전기사용료의 부과세(10%) 납부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는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종합운동

장관리 및 운영 주체를 시장에서 소장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함은 물론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동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한편 이 조례 개정과 함께 종합운동장 입장료 징수업무는 삭제되므로 향후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중 시설사업소 사무의 일부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